

저작권 제도와 등록요건

김 시 호 교수

E-Mail: jurist4024@gmail.com



등아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단

11. 저작권의 발생

(1) 무방식 주의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등록이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며,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여 저작자에게 귀속됨 - 베른협약

- (2) 저작권 등록의 효과
 - 1) 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에 신청하여 등록
 -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추정됨
 - 3) 창작년월일을 등록한 경우 등록된 년월일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됨
 - 4) 등록되어 있는 저작물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12. 저작권의 보호기간

- (1) 저작인격권
 - 1)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여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함(일신전속권)
 - 2) 단, 저작자 사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나,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형 등이 허용됨.
 -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할 당시 저작자의 의도와 목적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해당)





(1) 저작재산권

- 1)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여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저작자 사후 70년간 존속
- 2) 단체명의저작물(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
- cf) 업무상 저작물이 50년간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창작 때로부터 70년 존속
- 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 ex) "A"라는 저작물의 저작자인 甲이 2005년 1월 3일자로 사망한 경우 "A"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2006년 1월 1일부터 70년간인 207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함





13. 저작재산권의 제한

- (1)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과서에 게재하거나 대학 등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도서 등에 게재하는 경우
- Cf) 학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2)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 신문 등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인용하는 경





- (4)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 (5)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원소유자가 전시하거나,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은 복제가 가능함. 단,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여서는 안됨
- Cf)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법률, 법원의 판결, 사실전달의 시사보도 등





Chapter.

저작권의 사례



1. 현상공모 관련

(1) 사안

甲은 乙 회사의 상품 광고에 사용될 광고포스터 모집에 응모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후 乙 회사는 甲의 광고포스터를 색채만 달리하여 상품광고에 사용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1. 현상공모 관련

- 1) 광고포스터는 저작권법상의 미술저작물에 포함된다.
- 2) 한편, 현상응모만을 하였다 하여도 구체적 계약 등이 없는 경우 현상응모의 문구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이 양도되었다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광고포스터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인격권의 침해 및 저작재산권 중 복제, 배포권 등이 침해가 성립됨.
- 3) 다만, 乙이 스스로 창작하지 않았음을 甲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乙이 甲의 저작물을 현상공모하였으므로 충분한 접근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의거성이 추정됨





2. 동일성유지권을 손상시킨 경우

(1) 사안

미술작품을 화랑에 양도하면서 그 복제에 대한 권한까지 양도하였다. 이러한 계약을 근거로 화랑 측이 미술품을 복제하였으나, 저작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복제물이 원작의 이미지를 상당히 손상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저작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구제가 가능한가?





2. 동일성유지권을 손상시킨 경우

- 1)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복제, 배포 등의 재산적 이용에 대한 권리 이외에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있다.
- 2)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을 얻거나 복제권을 이전 받아 복제물을 제작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복제물이 원작의 이미지를 손상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저작자는 재산적 이용에 대한 허락 또는 재산권의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인격권 가운데 '동일성유지권'을 근거로 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3. 벽화를 복제하여 광고에 이용한 경우

(1) 사안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 학교 주변 건물의 외벽에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벽화를 그렸는데, 모 회사에서 그 그림을 상품 선전광고의 주된 방법으로 복제·이용하여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다.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3. 벽화를 복제하여 광고에 이용한 경우

- 1) 벽화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
- 2)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금지되며,
- 3) 회사를 외벽의 벽화를 복제하여 신문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4. 저작물을 양도한 경우

(1) 사안

디자이너 甲은 乙(프라모델 전시/판매관)에게 자신의 로봇 캐릭터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 그런데 乙은 그 프로모델을 복제하여 전시관 관람자에게 기념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甲은 乙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4. 저작물을 양도한 경우

- 1) 디자이너 甲이 乙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양도하였다 하여도 저작권까지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 2) 乙은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로서의 일정한 권리를 갖는데, 이는 ① 원작품에 의하여 직접 전시할 권리(공중에 개방된 장소가 아니여야 함), 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책자에 당해 저작물을 사진 등으로 복제하여 배포할 권리 등에 한한다.
- 3) 따라서, 甲은 乙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5. 2차적 저작물

(1) 사안

디자이너 甲이 제작한 미술저작물과 비슷한 작품을 乙이 무단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甲은 乙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5. 2차적 저작물

- 1)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짐
- 2)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면 저작재산권 중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됨
- 3)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함으로써 그 작품 속에서 원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이 2차적 저작물인 것으로 보고 있음





Chapter.

저작권의 침해



저작권 침해

- 1. 저작권 침해의 요건
- (1)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도용을 하여야 하며, 실질적 유사성이란 일견하여 원 저작자의 저작물과 유사한 것을 말하나, 단순히 이미지 등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부족함

(2) 의거성(접근성)

저작권상의 창작성은 상대적 창작성이므로 동일한 저작물이라 하여도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우연히 동일한 것이라면 침해가 아님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의거성)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는 경우 의거성이 추정됨





저작권 침해

- 2. 저작권 침해의 구제
- (1) 분쟁조정 신청
 - 1)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2) 법원에 침해금지청구 등을 하는 경우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수 있어 자주 이용되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소정의 사용료 지급 등을 조건으로 분쟁을 해결할수 있음
- (2) 침해금지청구권

저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저작권 침해

(3) 손해배상청구권

타인의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경우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음

(4) 명예회복 청구권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5) 침해죄

- 1) 저작재산권 침해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저작인격권 침해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Thank You for Listening



